

##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) 운영

### □ 지원 대상

- (대상 학생)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문학사과정 2학년 이상인 학생  
(단,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이어야 함)
- (취업지원형)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학생
- (창업지원형) 학점인정 창업 강좌 이수(예정) 학생

### □ 지원내용

- (지원내용)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및 취·창업지원금 200만원\*  
\*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
- (지원기간)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,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
-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하고,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
\* '등록금 납부' 후 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, 유급,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(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)

### □ 장학생 의무사항

- 졸업 후 중소·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
 

$$\text{의무종사(취업, 창업)기간} = \text{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} \times 6\text{개월}$$

  - 재학 중 창업도 인정하나, 장학재단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 충족 필요
  - 중소·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은 2회 이내로 상호대체 가능
  - 한 기업에 장기재직하는 경우,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기간 단축 가능
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 
※ 단, 고용보험 DB 연계로 취업 여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
- 재학 중 매 학기 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(보험금은 재단이 부담)

### □ 중소기업 등 인정 범위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- 개별기업 평균매출액(최근 3년) 2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
  -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
- 고용부 '청년친화강소기업' (단, 중견기업일 경우 요건 충족 필요)
-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정 불가
  - 직계존속(부 또는 모)이 대표(이사)인 기업
  - 소비·향락업 및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, 다단계 판매업체
  - 비영리기관\*, 공공기관, 대기업, 초·중·고 및 대학교  
\*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(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)
 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
#### 참 고

- ▶ 소비·향락업: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 
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, 위생관리법 제2조,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여업, 복권발행업 등)
- ▶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: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
부동산업·일반유희 주점업·무도유희 주점업·기타 주점업·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·무도장 운영업 등
- ▶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
3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
## □ 창업기업 인정 범위
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제한업종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참여 가능

- **(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외 업종)**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  
※ 단, 부동산학과 학생의 부동산업 창업 인정
- **(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외 업종)** 병원, 약국,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

- **(중복지원 금지)** 「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」에 해당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 금지\*  
\* 일모아시스템(www.ilmoa.go.kr)에서 중복사업 여부 확인 (고용부 문의)

- **(지원중단)** 재학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

-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
-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,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
- ③ 장학생 지원 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,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
- ③ 휴학·자퇴·제적·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
※ 단,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
- ④ 초과학기, 졸업유예, 직계존속의 간병,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,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
- ⑤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 취·창업지원금 지원중단

## □ 장학생 의무교육

- **(교육운영)** 매학기 일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과정 및 시수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
- **(장학생 간 교류 활성화)** 희망사다리 장학생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, 취·창업 노하우 등 정보 공유 활성화

## □ 사후관리

- **(제출서류)** 유형별 증빙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
  - **(취업기간 확인서류)**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, 중소기업 등 검토표, 기업신용평가사 정보\*,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자료, 재직증명서, 직장 건보 납부내역 등  
\* 중기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운영사인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활용
  - **(창업기간 확인서류)**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 가입확인서, 매출액 증빙자료, 거래 내역서 및 지식재산권 등  
※ 재학 중 창업도 장학재단 규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정(매출액 발생일 기준)
- **(환수 및 유예 면제)**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장학금 환수 또는 의무 유예, 환수면제 처리
  - **(장학금 환수)** 의무종사(취업, 창업) 미준수\*시, 장학금 환수  
\* 진학(대학원, 유학, 장기어학연수) 및 중소기업 외(대기업, 중견기업(매출액 2천억 이상), 공공기관, 학교, 비영리기관, 외국법인, 직계존속 기업, 유흥·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) 취업 등
  - **(의무유예)**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 가능  
※ 군입대(산업기능요원), 질병·상해, 임신·출산, 천재지변, 이직(예정)·퇴사 등, 전공심화, 미취업·미창업, 기업 도산, 폐업, 고용디딤돌 참여기간(고용부)
  - **(환수면제 등)** 사망, 파산 또는 면책, 질병 및 상해\*,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 
\* 보건복지부 고시 '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' 평가방법 활용